

운송약관
승객 및 수하물용

효력발생일: 2025년 10월 23일

제57차 개정

목 차

- 제1조 용어의 정의
- 제2조 적용 대상
- 제3조 당사의 정보
- 제4조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
- 제5조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정부 정책 비용, 할증료
- 제6조 항공권, 여정 및 항공편 놓침
- 제7조 예약 변경
- 제8조 다른 사람이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
- 제9조 여행 서류, 입국 요건, 세관, 보안 및 심사
- 제10조 환불
- 제11조 탑승수속(체크인) 및 탑승
- 제12조 허용되지 않는 행동
- 제13조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당사의 권리
- 제14조 항공기 탑승에 적합한 건강 상태 및 건강상 문제를 동반한 비행
- 제15조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여행 서비스
- 제16조 반려동물 및 보조견 동반 여행
- 제17조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및 등급
- 제18조 고객을 위한 추가 서비스의 주선
- 제19조 수하물
- 제20조 연결 항공사, 코드셰어, "웻 리스" 항공편
- 제21조 일정, 운항 차질, 탑승 거부
- 제22조 활주로 지연 비상 계획

제23조 고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 및 보상청구 제기

제24조 여행자 보험 및 지급불능에 대한 보호

제25조 해석

1 용어의 정의

본 운송약관상 사용되는 특정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 "우리" 및/또는 "당사" 는 Virgin Atlantic Airways Limited를 의미합니다.

"고객", "고객의" 및 "고객 본인" 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 여행을 위해 티켓을 소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항공기를 이용했거나 이용할 예정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승객"에 대한 정의도 참조). 환불과 관련하여서는 항공권 비용을 지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와 관련하여서는 부모 또는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항공사 지정 코드" 는 항공사를 식별하는 두 글자 또는 세 글자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당사의 항공사 지정 코드는 "VS"입니다.

"적용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태리프)
- b) 당사 또는 코드셰어 항공편의 운영 항공사가 수시로 적용하는 규정, 정책 및 조건으로, 이는 당사 웹사이트(www.virginatlantic.com) 또는 해당 운영 항공사의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견"은 고객이 장애가 있는 경우, 다음의 개를 의미합니다.

- Assistance Dogs(영국)의 회원으로 등록된 지정 자선단체를 통해 영국에서 훈련된 개
- International Guide Dog Federation, Assistance Dogs International 또는 Assistance Dogs Europe에 소속된 해외의 지정 자선단체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훈련된 개
- 위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에서 훈련된 개

"공인 대리인"은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편 판매를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항공권 판매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 휴대 수하물 또는 항공편에 고객이 소지하는 기타 개인 소지품 전체를 의미합니다.

"수하물 식별 태그"는 각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위탁 수하물"은 당사가 보관하여 항공기 화물칸에 실리는 수하물로, 당사가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급한 고객의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당사 또는 귀하의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가 정한 시한으로, 해당 시한 까지 탑승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코드셰어"은 당사의 항공사 지정 코드("VS")가 표시된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가 당사를 대신하여 운항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운송약관"은 본 운송약관을 의미합니다.

"연결 항공권"은 당사가 다른 항공권과 연계하여 고객에게 발행한 항공권으로, 두 항공권을 합쳐서 하나의 운송 계약을 구성하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연결 항공편"은 동일한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기재된 후속 항공편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고객과 Virgin Atlantic와의 운송계약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본 운송약관
- (b)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태리프)
- (c) 당사 웹사이트(www.virginatlantic.com) 또는 해당 운영 항공사의 웹사이트에 명시된, 당사 또는 코드셰어 항공편의 운영 항공사가 수시로 적용하는 규정, 정책 및 조건
- (d)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부모/법정대리인 동의서의 내용

"피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a)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적 피해
- (b) 수하물의 분실, 일부 분실, 도난, 파손 또는 훼손.

"지연"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a) 고객 항공권에 표시된 최종 목적지 공항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 (b) 고객 항공권에 표시된 최종 목적지 공항에 수하물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일수"는 1주 7일 전부를 의미합니다. 특정 일수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통지를 보낸 날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공권 유효기간 산정의 경우, 항공권 발권일 당일 또는 항공편 출발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탑승 거부"는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였음에도 항공기에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객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란 고객의 통제를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객이 모든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고객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 발권 시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기존 건강 상태
- 연결 항공편의 예정된 시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고객의 직장, 사업 또는 개인 생활과 관련된 약속/약정
- 정확하고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정부 정책 비용"은 정부가 요구하는 제도(예: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지상 서비스"는 당사 또는 제3자가 당사를 대신하여 지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서비스, 탑승수속 서비스, 라운지 이용 등이 포함됩니다.

"휴대 수하물"은 고객이 항공편 객실로 반입하는 수하물 및 개인 소지품을 의미합니다.

"연계 여행 상품"이란, 2018년 제정된 패키지 여행 및 연계 여행 상품 규정(Package Travel and Linked Travel Arrangements Regulations) Regulation 2에 정의된 연계 여행 상품을 의미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을 의미합니다.

"패키지 여행상품"은 다음 규정에 정의된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 2018년 7월 1일 이전 예약 시: 1992년 제정된 패키지 여행 규정(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 Regulations)의 Regulation 2
- 2018년 7월 1일 이후 예약 시: 2018년 제정된 패키지 여행 및 연계 여행 상품 규정(Package Travel and Linked Travel Arrangements Regulations)의 Regulation 2

"패키지 여행 규정"은 다음 규정을 의미합니다.

- 2018년 7월 1일 이전 예약 시: 1992년 제정된 패키지 여행 규정(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 Regulations)
- 2018년 7월 1일 이후 예약 시: 2018년 제정된 패키지 여행 및 연계 여행 상품 규정(Package Travel and Linked Travel Arrangements Regulations)

"승객"은 항공권을 소지하고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운항 승무원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고객" 정의 참조).

"부모/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단독 여행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는 동의서입니다.

"Regulation 2027/97"은 항공사 사고 책임에 관한 EU 규정(EC) 2027/97 및 개정 규정 EC 889/02를 의미합니다.

"Regulation 261/2004"는 탑승 거부, 항공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 시 승객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EU 규정(EC) No. 261/2004(기존 규정 EEC No. 295/91을 대체)합니다.

"특별인출권" 및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공식 교환 단위를 의미합니다.

"경유지"는 여정표 또는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과 최종 목적지 공항 사이의 여정 중 예정된 경유지를 의미합니다.

"운임 규정" 또는 "태리프"는 항공사가 관계 당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한 항공사의 운임, 요금 규정 및 관련 조건을 의미합니다.

"항공권"은 당사 또는 공인 대리인이 발행한 확정된 예약에 대한 전자항공권으로, 해당 항공권에 명시된 승객이 해당 항공편을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독 여행 미성년자" 또는 "YPTA"는 첫 항공편 탑승일을 기준으로 만 14세 및 15세인 승객으로, 동일한 항공편에 만 18세 이상의 다른 승객이 동반하지 않는 승객을 의미합니다.

"바르샤바 협약"은 고객의 항공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다음의 협약을 의미합니다.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이하 바르샤바 협약)
-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
- Additional Protocol No. 1 of Montreal(1975)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 헤이그에서 Additional Protocol No. 2 of Montreal(1975)에 따라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 헤이그에서 Additional Protocol No. 4 of Montreal(1975)에 따라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 과달라하라 보충 협약(Guadalajara Supplementary Convention) (1961)

2. 고객과 당사 사이의 계약

2.1 본 운송약관은 당사가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 및 당사가 고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지는

기타 모든 경우에, 다른 적용 조건과 함께 적용됩니다.

2.2 일부 항공편은 코드셰어 계약에 따라 제3의 항공사가 운항합니다. 즉, 고객이 당사를 통하여 예약하고 당사의 항공사 지정 코드가 표시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항공편은 코드셰어 파트너사가 운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예약을 진행할 때 해당 항공편이 당사 또는 코드셰어 파트너에 의하여 운항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2.3 당사가 고객에 대하여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다른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항공권을 발급하는 것이며, 고객의 여정에는 해당 항공사의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단, 코드셰어 파트너가 운항하는 항공편은 제외합니다). 코드셰어 항공편의 경우 제20조를 참조하십시오.

2.4 전세기 계약에 따라 당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편의 경우, 항공권 또는 해당 전세기 계약에 본 운송약관이 참조로 포함되어 있다면, 본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2.5 고객의 패키지 여행상품에 당사의 항공편이 포함된 경우, 고객과의 계약은 해당 여행상품 기획사와 체결된 것입니다. 본 운송약관은 여행상품 기획사와의 계약에 포함되며 항공편에는 본 운송약관과 여행사의 약관이 모두 적용됩니다. 항공권 환불 또는 변경 요청은 당사가 아닌 여행상품 기획사를 통하여 처리됩니다.

2.6 다음의 경우, 본 운송약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6.1 본 운송약관의 일부가 당사의 운임 규정이나 관련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운임 규정 및/또는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2.6.2 본 운송약관 중 일부가 관련 법령상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합니다.

3. 당사의 정보

3.1 당사의 이름은 항공사 지정 코드인 "VS"로 약칭될 수 있습니다.

3.2 당사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VHQ, Fleming Way, Crawley, West Sussex, RH10 9DF, England.

3.3 당사 연락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

4.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

당사는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이전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policies/virgin-atlantic-airways-and-virgin-atlantic-holidays-privacy-notice>

5.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정부 정책 비용, 할증료

5.1 운임

항공권 운임은 예약 시점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점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일부 운임에는 변경 또는 취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제6조와 제7조를 참조하십시오.

5.2 가격 오류 발생시

- (a) 당사는 모든 운임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류가 발생하여 잘못된 운임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운임으로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 고객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 차액의 지불/환불
 - (ii) 예약 취소 및 전액 환불
- (b) 예약 당시 운임이 잘못 표시되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고객은 항공권 구매 이후 발생한 합리적이고 환불이 불가능한 자기 부담 비용(out-of-pocket expense)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고객은 지출한 자기 부담 비용의 액수, 지출일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증빙을 보여주는 영수증이나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c) 예약 당시 표시된 운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하였던 경우에는 고객이 지출한 자기 부담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d) 미국 출발/도착 항공편에 대한 착오 운임의 취소 및 환불은 미국 교통부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이루어집니다.
- (e) 제5.2조 제(a)항 내지 제(c)항의 규정은 관련 법령과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3 세금, 수수료, 요금, 정부 정책 비용

- (a) 항공권 가격에는 예약 시점에 적용되는 운임, 할증료, 수수료, 요금, 세금, 정부 정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시 이러한 모든 항목에 대한 금액을 알려드리며, 항공권에도 별도로 표시됩니다.
- (b) 예약 후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요금 또는 정부 정책 비용이 새로이 부과되거나 인상되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그 인상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예약 후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부과 항목이 폐지 또는 인하되는 경우, 고객은 합리적인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해당 금액의 환불을 당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help.virginatlantic.com/global/en/contact-forms/refund-form.html>
- (c) 예약 후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에서 부과하는 것 외의) 할증료, 수수료 또는 요금이 새로이 부과되거나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 (d) 일부 공항에서는 도착 또는 출발 시 현지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고객의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5.4 할증료

- (a) 당사는 운임에 자체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고객은 예약 시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모든 할증료의 금액을 알려드리며 이는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b) 만일 고객이 항공권 대금을 전액 결제한 후 할증료가 인상되는 경우, 고객은 할증료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5.5 신용 카드 요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사는 예약 시 해당 수수료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5.6 통화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항공권 대금 전액을 항공권이 발행된 국가의 통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6. 항공권, 여정 및 항공편 놓침

6.1 항공권에 포함된 사항

고객의 항공권은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 공항 간 항공편(경유지 포함)을 위한 것이며, 공항 간 및 공항과 시내 터미널 간 지상 교통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2 항공권 내 이름

예약, 항공권 및 여권에 기재된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6.3 항공권 결제

고객이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이 정한 기한까지 항공권 대금을 전액 결제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고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4 항공권 유효기간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적용된 운임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항공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1년 동안 또는 (첫 여정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항공권에 따른 첫 여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첫 여행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6.5 올바른 순서로 항공편 이용하기

- (a) 항공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경유지 포함) 여행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고객이 지불한 가격은 당사의 운임 규정 및 고객이 예약한 항공편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모든 항공편을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대로 탑승해야 하며 여정 중 항공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b) 만일 고객이 정해진 순서대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않는 경우(항공편을 놓치는 경우 포함) 항공권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당사는 후속 또는 돌아오는 항공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c) 정해진 순서대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우(항공편을 놓치는 경우 포함) 당사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 또는 공인 대리인(공인 대리인을 통해 항공편을 예약한 경우)에 여행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고객이 선택 가능한 옵션은 항공권 유형과 적용되는 운임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예약을 변경할 수 없거나, 최초 항공권 결제 가격과 변경된 순서의 가격 간의 차액과 변경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수수료는 항공권 유형 및 적용되는 운임 규정에 따라 다르며, 당사 또는 또는 공인 대리인(이를 통해 예약한 경우)에 연락 시 안내해 드립니다.
- (d) 정당한 사정 변경(고객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포함)으로 인해 정해진 순서대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당사에 연락하여 그러한 변경에 대한 증빙을 (당사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하는 경우, 당사는 후속 또는 돌아오는 항공편을 유지해드리며 추가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6.6 고객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 (a) 고객이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수료 및 요금 지불 조건 하에) 버진 애틀랜틱 항공의 다른 항공편으로 재예약해 드립니다. 예정된 출발 시간 2시간 이내에 연락하실 경우, 고객의 귀국편 또는 연결편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 (b) 어떤 이유로든 고객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항공편을 놓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당사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시면, 당사는 동일한 예약 등급의 다음 가능한 버진 애틀랜틱 항공편으로 귀하를 재예약해 드리며 추가 요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다음 항공편의 예약을 위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 고객이 다음 시간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편으로 여행하지 않고 이후의 다른 날짜에 여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 (ii) 고객이 당사 항공편을 이용해 다른 목적지로 여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 (iii) 다른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으로 여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 (iv) 고객이 지불한 좌석 등급보다 높은 예약 등급의 좌석으로 여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 (c) 고객이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고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당사에 연락하여 선택 사항을 논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공권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돌아오는 항공편 또는 후속 항공편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d) 고객이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고 2시간 이내에 당사에 연락하여 선택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 고객의 귀국편 또는 연결편이 이미 취소된 경우, 당사는 동일한 예약 등급의 좌석 여유가 있고 변경된 여정에 대한 추가 운임, 세금, 수수료 및 해당 변경 수수료(고객의 항공권 유형 및 적용 요금에 따라 다름)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공편을 재예약해 드립니다. 고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했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 사건의 증빙 자료를 당사에 제공한 경우, 당사는 동일한 예약 클래스의 좌석 상황에 따라 귀하의 귀국 또는 연결 항공편을 무료로 재예약해 드립니다.
- (e) 고객은 항공편을 놓치거나 당사에 의하여 출발 또는 돌아오는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제10조를 참조하십시오.

6.7 항공권 또는 부가 상품은 당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공인 대리인을 통해서만 예약해야

합니다. 당사는 공인 대리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예약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예약 변경

7.1 이름 수정

- (a) 예약, 항공권, 여권에 기재된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 출발 예정 시간 최소 2시간 전까지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 (b) 예약 및 항공권의 이름을 수정하려면 당사 또는 예약을 진행한 공인 대리인에 문의하여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c) 다음 링크에서 이름 수정 및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

7.2 여정 변경

- (a) 고객은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여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이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이 예약 시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연한 여행 일정이 필요한 경우, 항공권의 운임 조건이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운임 조건이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b) 여정의 일부 변경(예: 항공권의 첫 번째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순서대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날짜 또는 노선)은 불가능하거나,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문의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및 그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나 환급이 발생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정 변경 시 변경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c) 정해진 순서대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아 여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6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3 항공권 양도

- (a) 항공권에 명시된 승객이 고객 본인만이 해당 항공권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 (b) 패키지 여행상품의 일부로 구매한 항공권이 아닌 경우, 항공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c) 패키지 여행상품에 포함된 항공권은 다음의 경우 양도할 수 있습니다.

- (i) 패키지 여행상품 제공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ii) 항공권 양도와 관련된 패키지 여행 규정의 요건을 준수했음을 당사(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iii) 출발일 전에 당사(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에 항공권 양도 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경우
- (iv) 당사(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에게 항공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v) 새 항공권 발급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수수료를 당사(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경우

7.4 예약 취소

예약을 취소하려면 당사 또는 예약을 대행한 공인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환불은 보유한 항공권의 종류와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0조를 참조하십시오.

7.5 질병으로 인한 항공권 유효 기간 연장

- (a) 여행을 시작한 후 다음의 경우, 당사는 고객이 여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에 기존 항공권상 좌석 등급과 동일한 좌석을 이용 가능할 때까지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i) 고객이 예기치 않게 질병에 걸리고 이로 인해 항공권 유효 기간 동안 후속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없고,
 - (ii)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b) 본 조에 따라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고객은 당사에 질병명칭과 언제부터 여행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인지가 명시된 공식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c) 고객의 항공권상 남은 여정에 하나 이상의 경유지가 포함된 경우, 고객이 의학적으로 여행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날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질병에 걸린 기간 동안 함께 여행하는 직계 가족 항공권의 유효 기간도 이와 유사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d) 고객이 여정 중 사망한 승객과 동반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항공권상 최소 체류 기간

조건을 면제하거나 유효 기간을 연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e) 여정을 시작한 후 고객의 직계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 및 고객과 함께 여행하는 직계 가족의 항공권상 최소 체류 기간 조건을 면제하거나 유효 기간을 연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f) 위 제(d)항 및 제(e)항은 당사에 유효한 사망 증명서를 제공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최대 45일까지 연장됩니다.

7.6 고객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고객이 여행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증빙을 (당사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다른 날짜 또는 다른 목적지의 다른 항공편으로 재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임, 항공사 부과 요금 및 할증료, 세금, 수수료 기타 요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예약 시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별도의 관리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8. 행위할 권한

8.1 다른 사람이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 당사는 그 다른 사람이 예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취소 및 변경 포함)에 대해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고객의 예약을 처리합니다.

8.2 고객이 다른 사람의 권한을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하여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

8.3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는 원 결제 수단으로만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0.4조를 참조하십시오.

8.4 여러 승객이 포함된 예약의 경우, 예약에 성명이 기재된 승객은 해당 예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른 승객의 항공편 취소 또는 변경 포함). 특정 승객의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

9. 여행 서류, 입국 요건, 세관, 보안 및 심사

9.1 고객이 다음의 준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고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방문 국가의 입국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

- (b) 유효한 여권, 모든 필요한 여행 서류, 비자, 건강 증명서, 비행 적합 증명서, 부모/법적 보호자 동의서 서명본(해당하는 경우), 기타 여행에 필요한 서류 또는 요건을 소지하고 당사에 제시할 것. 고객은 당사가 이러한 서류들의 사본을 보관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비행이 끝날 때까지 승무원이 이러한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c) 항공편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의 모든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정책 및 기타 요건(보건 관련 조치 포함) 준수
- (d) 상태가 양호한 여권 소지(여권의 페이지가 없거나 심하게 찢어졌거나 구멍, 얼룩, 재질 변경, 훼손, 여권 내 사진을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라미네이트 벗겨짐이 없어야 하고, 그 외 기타 여권의 무결성 및/또는 이름, 생년월일, 시민권 및 문서 번호 등 신원 확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손상이 없는 것을 의미함),

9.2 고객이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기타 여행 요건(입국, 출국, 환승 및 보건 관련 요건 포함)을 준수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고객은 당사에 다음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 (a) 관련 정부에서 당사에 부과한 벌금, 과태료 또는 과징금
- (b) 당사가 부담하게 된 모든 구금 관련 비용
- (c) 고객을 출발지 공항으로 돌려보내는 교통편 요금
- (d) 당사에 기타 발생하는 모든 비용

당사는 위와 관련하여 고객이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당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목적지까지의 항공권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9.3 세관, 보안 검사, 건강 심사

- (a) 고객은 당사, 정부 공무원, 법 집행 기관, 공항 관계자 또는 여정을 제공하는 다른 항공사가 고객과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과 필요에 따라 건강 심사/진단(체온 측정 포함)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 (b) 세관 또는 기타 정부 관계자가 수하물을 검사하는 경우 고객은 검사에 직접 입회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러한 검사 중에 고객이 입은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환불

10.1 전액 또는 부분 환불 가능 항공권

- (a) 일부 항공권은 할인된 요금으로 판매되며 예약 취소 시 일부 또는 전액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에 맞는 항공권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b) 환불 가능한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당사에 이미 지불한 운임, 항공사 부과 요금과 할증료,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제10.3조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
- (c) 환불 가능한 항공권이고, 고객이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항공권에 관련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 당사는 고객이 이미 지불한 운임, 항공사 부과 요금과 할증료, 세금, 수수료 및 요금에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 관련된 차액을 환불해 드리며, 이러한 환불시 당사는 관리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예약은 새로운 여정을 반영한 요금 재조정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7.2조를 참조하십시오.
- (d) 일부 티켓은 예약 과정에서 안내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조건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수수료는 지급될 환불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10.2 환불 불가 항공권

- (a) 고객이 환불 불가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취소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b) 고객이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다음에 대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 세금
 - (ii) 정부, 기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가 부과하는 수수료 및 요금
 - (iii) 정부 정책 비용
- (c) 환불 불가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Regulation 261/2004, 14 CFR Part 260(미국 출발, 도착 또는 미국 내 여행의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또는 본 운송약관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해 환불해 드립니다.
- (d) 승객이 여행을 완료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 경우 환불 시 행정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10.3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당사의 권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이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 고객이 환불 가능한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여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a) 고객이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종료된 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항공권 유효 기간의 연장 관련하여서는 제7조 참조)
- (b) 고객이 해당 국가에 도착하여 당사 또는 정부 공무원에게 출국 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으로 항공권을 제시한 경우(단, 고객이 당사에 체류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항공사 또는 다른 교통편을 통하여 출국할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c) 제11.4조, 제12.2조, 제13조,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가 고객의 항공편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 (d) 고객의 항공편이 패키지 여행의 일부인 경우(제2.5조 참조)
- (e) 고객이 환불을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제10.4조 참조)

10.4 환불 관련 일반 정보

- (a) 당사가 동의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환불은 기존의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결제 수단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환불해 드립니다.
 - (i) 항공권을 결제하였고,
 - (ii) 항공권을 결제한 사람임을 당사에 증명하였으며,
 - (iii) 환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음을 당사에 증명한 경우
- (b) 당사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항공권 결제에 사용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환불금을 지급합니다.
- (c) 환불은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이 티켓을 발행하고 환불을 승인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 (d) 본 조항에 따른 환불을 받을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1. 탑승수속(체크인) 및 탑승

11.1 탑승수속(체크인)

- (a) 고객은 탑승수속 마감시간까지 모든 탑승수속 절차(수하물 위탁 및 탑승권 수령 포함)를 완료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b)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당사가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한 예정된 출발 시간 70분 전입니다. 다만 고객의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경우 그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여행일 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11.2 탑승

- (a)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고객은 예정된 출발 시간 최소 30분 전까지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야 합니다.
- (b) 다른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의 경우 탑승 게이트 도착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항공편 탑승수속 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11.3 탑승수속 마감시간까지 탑승수속(즉, 항공편 탑승권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탑승 게이트에 제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당사 또는 해당 항공편을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거나 좌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4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모든 탑승수속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시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고객이 입은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은 미사용 항공편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 항공편의 재예약은 제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2. 허용되지 않는 행동

12.1 허용되지 않는 행동

고객은 공항이나 기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a) 관련 법령 위반
- (b) 범죄 행위
- (c) 지상 직원 또는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d) 지상 직원 또는 승무원의 지시(안전, 보안, 음주, 약물, 흡연, 전자담배, 안전벨트 착용, 전자기기 사용 또는 지상 직원, 승무원 또는 승객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지시 포함)를 따르지 않거나 기내 연기 감지기를 조작하는 행위
- (e) 승무원이 제공하지 않은 주류(면세품 구매 포함)를 섭취하는 행위

- (f) 알코올 또는 약물에 영향을 받는 상태 또는 불법적으로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
- (g) 폭탄, 하이재킹 또는 기타 보안 위협 행위(장난/농담 포함)
- (h) 항공기 또는 항공기 내 재산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위협에 빠뜨리거나 훼손하는 행위
- (i) 다른 사람을 위협, 상해, 학대 또는 폭행하는 행위
- (j) 욕설, 협박, 모욕 또는 무질서한 행동
- (k)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 짜증, 불편을 초래하거나, 피해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동 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 (l) 본인의 여행 서류 파기하는 행위
- (m)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조치(마스크 착용 포함)와 관련하여 지상 직원 또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 (n) 승무원, 지상 직원 또는 승객의 동의 없이 승무원, 지상 직원 또는 승객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12.2 고객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상황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a) 물리적 제지
- (b) 항공편 탑승 거부 및 항공기에서의 퇴거/강제 하차
- (c) 알코올, 마약 또는 기타 물품 압수
- (d) 경유 후 운송 거부
- (e) 항공권에 표시된 남은 여정에 대한 운송 거부
- (f) 장래의 운송 거부(유효한 탑승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부 가능)
- (g) 경찰이나 법 집행 기관에 신고

12.3 고객 행동으로 인한 당사의 비용 배상

고객은 다음을 포함하여 고객의 허용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당사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a) 고객이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한 재산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 (b) 고객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고객, 승무원 또는 지상 직원에 대한 보상 비용

(c) 고객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방향을 바꾸거나 회항하기 위한 비용

13. 고객의 탑승 또는 고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당사의 권리

13.1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는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항공편 탑승 또는 고객의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고객이 소지한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a) 고객이 제12조에 명시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
- (b)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이 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건강에 위험이 되었거나, 위험이 될 수 있는 경우
- (c)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이 항공기 내 다른 고객의 편안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d) 위탁수하물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경우
- (e)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이 보안 검사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했거나 고객이 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제19.2조 참조)
- (f) 고객이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한 경우
- (g) 고객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나 건강이 고객, 항공기 또는 기내의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가 되는 경우
- (h) 유효한 여행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i) 여권이 정상적인 마모 이상으로 손상되었거나 여권의 페이지가 없거나 심하게 찢어졌거나 구멍, 얼룩, 재질 변경, 훼손, 여권 내 사진을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라미네이트 벗겨짐이 있거나, 그 외 기타 여권의 무결성 및/또는 이름, 생년월일, 시민권 및 문서 번호 등 신원 확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손상이 있는 경우
- (j) 여행 대상 국가 또는 경유지가 있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 당국이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에 통보한 경우
- (k) 여행 서류 또는 여행에 필요한 기타 정보의 복사를 거부한 경우
- (l) 지상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여행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한 경우, 또는 항공권 구매 경위, 보유 항공권 유형에 대한 자격 요건 또는 해당 항공권이 발급된 직원 여행 혜택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m) 고객이 환승을 위하여 착륙한 국가에서 관련 정부 당국에 입국 허가를 요청한 경우
- (n) 고객 운송이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o) 고객 정보를 포함하여 정부 당국이 고객에 대해 제공하도록 당사에 요청한 정보를 비행 전에 당사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p) 고객, 고객의 대리인(당사의 공인 대리인 제외) 또는 패키지 여행상품 기획사가 (i) 당사 또는 다른 항공사를 이용한 여행과 관련하여 정확한 운임, 항공권 요금 전액 또는 후속 구매에 따른 비용 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예약과 관련된 신용카드 청구 금액에 대해 차감을 청구하거나 사기 경보를 발령하거나 합법적인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q) 면세품을 포함하여 지상 또는 객실에서 당사로부터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r) 고객이 사기, 위조, 불법 취득한 항공권, 로열티 또는 보상 프로그램 규정의 약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또는 취득한 항공권, 또는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이 발급하지 않았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은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 (s) 분실로 신고된 항공권을 제시한 경우
- (t) 고객이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에 의하지 않은 변경 내용이 포함된 항공권을 제시한 경우
- (u) 고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v) 예약, 항공권 및 여권에 표시된 이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w) 당사의 동의 없이 정해진 순서대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않았거나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제6조 및 제7조 참조)
- (x) 탑승수속 마감시간까지 탑승수속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탑승 게이트에 정시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y) 당사, 고객 항공편을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 또는 정부 또는 집행 기관이 합법적으로 요청한 건강 검사/진단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 (z) 고객 또는 고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16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aa) 고객 또는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여행자(예: 미성년자)가 법률, 법원 명령 또는 보석 조건

에 따라 항공기 출발지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bb) 고객이 사기 또는 위조된 여행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서류를 제시하거나 여행에 필요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cc) 이전 항공편에서 또는 이전 항공편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된 방식으로 행동한 적이 있는 경우
- (dd) 고객이 무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불합리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했거나 당사의 지상 또는 백오피스 직원, 대리인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불안을 야기한 경우
- (ee) 고객이 제9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ff) 고객이 첫 항공편 출발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만 18세 이상인 다른 승객이 동일한 항공편에 동행하지 않은 경우(또는 고객이 만 18세 미만의 동반자가 없는 승객에 대하여 특정한 요건을 두고 있는 관할권으로부터 출발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 (gg) 고객이 단독 여행 미성년자(YPTA)이고 본 운송약관 제15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hh) 항공권의 전체 또는 일부가 로열티 또는 보상 프로그램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취득되었으나, 이에 사용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관련 규정, 약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획득, 사용,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된 경우
- (ii) 항공권 또는 부가 상품 또는 서비스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당사의 정책(직원 여행 정책 포함) 위반 또는 사기를 통해 획득되었거나, 공인 대리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

13.2 위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탑승이 거부된 경우, 고객은 Regulation 261/2004 제21조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탑승 거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3.3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는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a) 당사가 해당 고객에게 해당 통지일 이후 운송을 거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 후 해당 고객이 여행을 시도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고객의 운송을 거부할 것이며 해당 고객은 어떠한 보상이나 기타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 (b) 운항상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의 무게 제한 또는 좌석 수용 능력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승객 및/또는 수하물을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당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보상 및 기타 구제 조치를 제공합니다.
- (c)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누군가가 위의 제13.1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행동했거나 그럴 가능

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14. 항공기 탑승에 적합한 건강 상태 및 건강상 문제를 동반한 비행

14.1 고객은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그 건강 상태가 비행에 적합해야 합니다.

14.2 비행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의심되거나, 합리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또는 비행 종료 전까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건강검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비행 전에 전문가의 의학적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4.3 질환이 있지만 예방 조치(예: 약물 복용)를 취하는 경우 비행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은 경우 비행 전, 비행 중 및 비행 후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비행 적합성에 대한 서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비행 시 해당 증빙 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4.4 임신 중인 경우, 다음 웹사이트에서 당사의 정책 및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fa7c2e7e-a70a-462a-bae5-07a1c92822f3>

14.5 고객이 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a) 탑승을 거부하거나 고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함
- (b) 이미 예약된 항공편을 포함하여 향후 모든 항공편에 고객의 탑승 거부
- (c) 항공기 우회 비용 등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회수

14.6 당사가 고객의 비행 적합성에 대한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또는 송환 전문 업체 또는 고객의 다른 대리인)은 제공된 증빙 자료가 완전하고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4.7 건강상의 이유로 항공편의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금, 의료비 및 송환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 고객이 제출한 비행 적합 서면 증빙에 근거하여 당사가 비행을 승낙하였으나, 해당 증빙이 부정확·불완전하거나 오래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누락되었던 경우
- (b) 고객이 제14.1조에 따라 비행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14.8 기내에서 고객 또는 고객이 책임져야 할 사람과 관련된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적절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후속 여행 또는 장래 여행의 조건으

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여행 서비스

15.1 다음 승객의 운송은 당사의 정책,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a)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 (b) 무능력자
- (c)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 (d) 임신 중인 승객
- (e) 질병이 있는 승객, 또는
- (f) 지원이 필요한 승객

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gb/en/travel-information/special-flight-requirements.html>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b57d402e-ad5c-4963-b2ff-15e052a6d1e0>

15.2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약 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항의 공항 지원은 당사가 아닌 공항 운영자가 제공합니다. 공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 48시간 전 까지 당사에 알려주셔야 당사가 공항 운영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15.3 당사는 고객의 장애 또는 특별 요구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고객이 본 운송약관을 준수하는 한 해당 장애 또는 특별 요구 사항을 이유로 고객의 운송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15.4 건강상의 이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고객은 제14조도 준수해야 합니다.

15.5 단독 여행 미성년자는 항상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부모/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요청 시 이를 제시해야 비행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b57d402e-ad5c-4963-b2ff-15e052a6d1e0>

일부 관할권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가 혼자 여행하기 전에 정부 허가 및/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허가 또는 기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반려동물 및 보조견 동반 여행

16.1 고객이 고객의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려는 경우, 여행 전에 당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반려동물 운송에 대한 정책 및 절차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a28836e3-28b2-4fc6-9267-ffa7ef047d01>

16.2 고객은 보조견과 함께 여행할 수 있지만 여행 전에 당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당사의 보조견 운송에 대한 정책 및 절차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a28836e3-28b2-4fc6-9267-ffa7ef047d01>

16.3 당사가 보조견 운송에 동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a) 장애인 승객과 동행하는 보조견만 항공기 객실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b) 여행 기간 동안 보조견에 필요한 모든 건강 및 예방 접종 증명서, 허가증 및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고객이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c) 고객은 자신이 올바른 서류를 갖추지 않아 당사에 발생하게 된 모든 벌금, 비용, 청구, 손실 또는 책임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6.4 당사는 다음의 경우 보조견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a) 운영상 또는 안전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 (b) 고객의 보조견이 전염성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경우
- (c) 보조견으로 인해 항공편 방향이 변경되거나 운항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 (d) 보조견 운송이 출발, 입국 또는 경유 국가의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경우

16.5 위에 명시된 사유로 보조견 운송을 거부하여 고객의 탑승이 거부된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6.6 Regulation 2027/97,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당사는 반려동물 또는 보조견의 분실,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해당 규정 또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에게 적용 가능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7.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및 좌석 등급

17.1 기내 서비스(기내식 포함)

당사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특별 기내식 및 기타 기내 서비스를 광고한 대로 제공하도록 합리적

인 노력을 할 것이나, 운영, 안전,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별도로 요금을 지불한 기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급한 요금은 환불해 드립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7.2 지상 서비스

당사는 광고된 지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운영상의 이유로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상 서비스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되므로 당사는 해당 서비스가 항상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별도로 지상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나 당사의 파트너사가 해당 서비스를 설명된 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귀하의 법적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7.3 좌석

여행 전에 특정 좌석을 요청한 경우, 당사는 고객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기 탑승 후에도 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좌석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17.4 항공기

예약 시 당사가 특정 항공기가 고객의 항공편에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당사는 고객의 해당 항공기가 항공편에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항공기 유형이나 기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7.5 하위 등급 객실

운영상의 이유로 고객이 예약한 좌석보다 낮은 객실 등급의 좌석에 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Regulation 261/2004에 명시된 구제책(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적용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이는 고객의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8. 고객을 위한 추가 서비스의 주선

18.1 호텔 예약, 렌터카 또는 여행 프로그램 등 제3자가 고객에게 (정기 항공편 또는 지상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대리인 역할만 수행합니다.

18.2 당사가 고객의 대리인 역할만 하는 경우,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약관이 적용되며 당사는 고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9. 수하물

19.1 무료 수하물 허용량

- (a) 무료 수하물 허용량(만일 있는 경우)은 항공권 또는 여정표 및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070fb328-0c1c-4a04-a2bf-795834008bf1>

- (b) 당사는 항공편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수하물을 허용하며,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내에서의 위탁수하물 운송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19.2 금지 품목

수하물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a) 법으로 휴대가 금지된 품목 또는
- (b)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품목 또는 그 성질, 무게, 크기 또는 모양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품목: <https://www.virginatlantic.com/policies/dangerous-or-restricted-items>

이러한 물품이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당사는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9.3 깨지기 쉽거나, 귀중품, 부패하기 쉬운 품목

위탁수하물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a)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
- (b) 귀중품(예: 돈, 보석, 귀금속, 컴퓨터, 개인용 전자 기기) 또는 귀중 문서
- (c) 객실, 여행 중 필요하거나 분실 또는 파손 시 신속하게 대체할 수 없는 의약품 또는 의료 장비
- (d) 집 또는 자동차 열쇠

이러한 품목을 위탁수하물에 포함한 후 분실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Regulation 2027/97,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가 취할 수 있는 책임

의 제한 및 배제 조치 및 기타 모든 보호 조항에 따라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9.4 특별 품목의 운송

특별 품목(예: 사냥 및 스포츠 목적의 총기류 및 탄약)은 위탁수하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추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의 다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www.virginatlantic.com/policies/dangerous-or-restricted-items>

19.5 수하물 검색 권한

- (a)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당사는 고객의 수하물 검색, 스캔 또는 X-선 촬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객이 부재 중일 경우, 당사는 고객 없이도 수하물을 검색하여 금지 품목 또는 사전에 휴대에 동의하지 않은 특별 품목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 검색 또는 스캔으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X-선 또는 스캔으로 인해 수하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러한 피해가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 (c) 일부 국가의 보안 당국은 위탁수하물을 손상 없이 열 수 있는 방법으로 잠글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이 고객의 여행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9.6 위탁수하물

- (a) 당사는 탑승수속 시 위탁수하물마다 수하물 식별 태그를 제공합니다.
- (b) 위탁수하물은 안전, 보안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탑승하는 항공기와 동일한 항공기로 운송됩니다. 위탁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경우, 통관을 위해 고객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가 수하물을 전달할 것입니다.

19.7 수하물 파손에 대한 당사의 책임

- (a)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 수하물 파손에 발생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b) 당사는 위탁수하물이 당사의 책임 하에 있던 모든 기간 동안 위탁수하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피해가 고객의 과실, 부당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과실, 부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피해에 기여한 경우 또는 수하물의 고유한 문제, 품질 또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아닌 한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항공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수하물을 적절히 포장하고 내용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제19.3조에 열거된 품목을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는 이러한 항목의 운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운송한 경우 당사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c)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고객의 수하물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당사의 배상액은 승객당 1,519 SDR 상당액으로 제한됩니다. 단, 수하물 파손이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경우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이러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i) 의도적인 경우 또는

- (ii)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행동한 경우

- (d) 모든 배상청구에는 구매일 및 가격이 포함된 서면 구매 증빙이 첨부되어야 하며, 배상시 감가상각분은 공제됩니다.

19.8 수하물에 대한 당사의 책임 강화

위탁수하물의 가치가 제19.7조에 명시된 당사의 책임 제한을 초과하여 고객이 제19.7조에 명시된 당사의 배상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a) 출발지 공항의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특별 신고를 하고,

- (b) 당사 또는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추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신고 금액이 £1,750 이하인 경우, £17.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 (ii) 신고 금액이 £3,000 이하인 경우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본 조에 따라 고객이 추가 금액을 지불한 경우, 당사의 배상한도는 위 기재된 신고 금액의 최대 한도로 제한됩니다. 다만 고객은 위와 같은 신고만으로는 분실, 피해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신고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없고, 손실 및 피해를 입증한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하물의 가치가 위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여행 전에 수하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9.9 당사가 책임이 없는 수하물에 대한 피해

당사는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으로 인한 수하물 피해
- (b) 수하물의 고유한 문제, 품질 또는 결함으로 인한 피해
- (c) 항공 여행의 통상적인 충격 등으로 인한 수하물의 통상적인 수준의 마모 및 파손
- (d) 보안 검사 중인 수하물을 포함하여 당사의 관리 또는 통제를 받지 않은 수하물에 대한 피해
- (e) 수하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 고객은 고객의 수하물로 인해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 또는 당사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모든 제3자에 대한 모든 구상권 및 대위권을 보유합니다.

19.10 위탁수하물의 물리적 손상에 대한 보상청구

위탁수하물 또는 그 안에 든 품목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공항 내 당사 수하물 서비스 직원에게 알리고 수하물 이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 (a) 고객이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b) 고객은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상청구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청구를 제출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835c22d8-2bf4-4ed8-b50c-15054a27e9a4>

수하물의 물리적 손상에 대해 보상청구하는 경우, 고객은 당사의 요청시 손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수하물을 보관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9.11 위탁수하물 분실에 대한 보상청구

- (a) 위탁수하물이 고객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것으로 보아 고객은 당사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b) 당사에 대한 보상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835c22d8-2bf4-4ed8-b50c-15054a27e9a4>

19.12 위탁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에 대한 보상청구

위탁수하물 내 물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 고객은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상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청구를 제출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835c22d8-2bf4-4ed8-b50c-15054a27e9a4>

19.13 위탁수하물 지연에 대한 보상청구

- (a)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피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당사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 당사는 위탁수하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b)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고객의 위탁수하물 지연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승객당 1,519 SDR 상당액으로 제한됩니다. 단, 고객이 이러한 피해가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경우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이러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i) 의도적인 경우 또는
 - (ii)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행동한 경우
- (c) 관련 법령상 휴대 수하물 및/또는 위탁수하물에 대해 다른 책임 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 (d) 위탁수하물이 지연된 경우, 고객은 수하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보상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지연과 관련하여 보상청구를 제출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19.14 수하물 보상청구의 처리

- (a) 고객은 당사에 수하물 피해 또는 지연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때, 최초 보상청구 제출 시점 또는 그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한 내에 문제가 발생한 품목과 그 제조사 및 사용 기간으로 구분한 품목별 목록과 함께 해당 모든 품목의 구매 또는 소유권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b) 고객이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i) 모든 수하물은 고객의 소유물로 간주됩니다.
 - (ii)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은 두 명 이상의 승객의 소유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iii) 개인 물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은 탑승 시 휴대 수하물을 소지하고 있는 승객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c) 고객이 수하물 피해 또는 지연에 대한 보상 청구의 일부가 되는 품목과 관련하여 교체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모든 교체 품목의 구매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d) 수하물과 관련된 모든 보상청구의 경우, 고객은 당사가 고객의 보상청구 자격 및 지급 금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e) 위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상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15 수하물 관련 법적 조치 제기 시간 제한

- (a) 제19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고객이 당사에 서면으로 보상청구를 제출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수하물 피해 또는 지연에 대한 법률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피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i) 목적지 도착 날짜
 - (ii)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짜
 - (iii) 운송이 중단된 날짜
- (b) 법적 조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19.16 고객은 도착지 또는 경유지에서 위탁수하물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 수하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고객이 위탁수하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보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를 폐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9.17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지한 사람만 위탁수하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을 수령했지만 발급된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위탁수하물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20. 연결 항공사, 코드셰어, "웻 리스" 항공편

20.1 연결 항공사 항공편

항공권에 당사 및 다른 항공사 또는 연결 항공권에 따라 항공편이 운항되는 것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Regulation 2027/97,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및 기타 관련 법령의 목적상 단일한 운항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고객 운송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제23.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 코드셰어 항공편

- (a) 당사는 다른 항공사들과 코드셰어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협약이 고객의 여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당사를 통해 직접 항공권을 예약하는 경우, 해당 항공편이 다른 항공사에 의해 코드셰어 방식으로 운항되는 경우 (이미 알려진 경우라면) 예약 시점에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고객이 공인 대리인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대리인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b) 고객의 항공편이 코드셰어 방식으로 다른 항공사에 의해 운항되는 경우에도, 해당 코드셰어 항공편을 포함하여 귀하의 전체 여정에 대해 당사가 여전히 책임을 부담합니다.
- (c) 코드셰어 방식으로 다른 항공사가 항공편을 운항하는 경우, 본 운송약관이 적용되나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해당 항공편의 운항과 관련된 자체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항공사의 운송약관은 고객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해당 규정은 본 운송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다음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 탑승수속 시간 제한
 - (ii)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 (iii) 동물 운송
 - (iv) 탑승 거부시 보상
 - (v) 수하물 승낙
 - (vi) 운송 거부
- (d) 당사와 코드셰어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목록과 해당 항공사 웹사이트 링크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flywith.virginatlantic.com/gb/en/partner-airlines.html>
- (e) 고객이 캐나다를 출발하거나 캐나다에 도착하는 코드셰어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경우,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탑승 거부와 관련하여 Canadian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운항 항공사의 운임 규정(테리프) 및 운송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3 "웻 리스" 항공편

일부 항공편은 다른 항공사가 당사의 명칭, 로고, 항공사 지정 코드를 사용하여 당사를 대신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내용의 계약(이른바 “웻 리스” 계약)에 따라 운항됩니다. 항공편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항될 예정인 경우 (이미 알려진 경우라면) 예약 시점에 또는 알려지는 즉시 이를 안내드립니다. 본 운송약관은 고객의 “웻 리스” 항공편에도 적용됩니다.

21. 일정, 운항 차질, 탑승 거부

21.1 일정

- (a) 일정표에 표시된 출발 및 비행 시간은 예약일과 여행일 사이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한 출발 및 비행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는 당사와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b) 당사는 예약을 수락하기 전에 예정된 출발 시간을 알려드리며, 이는 항공권에 표시됩니다.

21.2 항공편 출발 전에 당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 (a) 항공권 발권 후 예정된 출발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이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를 통하여 안내드립니다. 최신 항공편 정보는 비행 전에 당사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발시간 변경 통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예: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연락처 정보 제공, 연락처 변경 사항 미통보 등)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b) 새 출발 예정 시간이 이전 출발 시간으로부터 5 시간 초과한 경우 또는 5 시간 미만이지만 변경으로 인해 연결 항공편 또는 크루즈를 놓칠 수 있으며 해당 공항 또는 크루즈 제공업체가 연결편을 탑승하기 위하여 제공한 최소한의 환승 시간의 여유를 확보하였었다는 증빙(요청 시)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
 - (ii) 가장 가까운 시일 내 이용 가능한 당사의 정기 항공편으로 여행(원래 항공권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등급의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iii) 추후의 날짜로 여행을 변경. 여행 운임, 항공사 부과 요금 및 할증료, 세금, 수수료 및 요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이 청구될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재예약 시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1.3 운항 차질

- (a) 당사는 서비스에 대한 차질(취소, 지연, 탑승 거부 등)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

를 취할 것입니다. 운항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는 다른 기종 또는 다른 항공사가 고객의 항공편을 운항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b)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5시간 이상 출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당사의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여행. 해당 여정은 최초 항공권 구매시 등급의 좌석 여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추후 고객이 편한 날짜에 당사의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 해당 여정은 최초 항공권 구매시 등급의 좌석과 동일한 등급의 좌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변경된 여행 날짜는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여야 합니다. 여행 운임, 항공사 부과 요금 및 할증료, 세금, 수수료 및 요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이 청구될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될 수 있습니다.

(iii)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

(c) 당사가 위의 조치를 취한 후에도 항공편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고객은 Regulation 261/2004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항 차질에 대하여 보상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dc2a02fb-d3fe-4e14-8a09-413bb96a8584>

(d) 고객이 중단에 대해 당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는 Regulation 261/2004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중단에 대해 고객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e) 항공편의 도착 예정일로부터 6년이 도과한 경우, 고객은 운항 차질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f) 캐나다 출발 또는 도착 코드셰어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경우,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Canadian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운임 규정 및/또는 운송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4 Regulation 261/2004에 따른 보상 청구

(a) 아래 (b)에 따라 고객이 Regulation 261/2004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제기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i) 고객은 제3자로 하여금 고객을 대리하여 보상청구를 하도록 하기 전에 Regulation 261/2004에 의한 보상청구를 당사에 직접 제기하여 당사로 하여금 28일의 회신 기

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상청구는 다음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help/categories/dc2a02fb-d3fe-4e14-8a09-413bb96a8584>

- (ii) 고객이 먼저 당사에 직접 보상청구를 제출하고 28일의 응답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제3자로부터 접수된 보상청구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iii) 고객은 예약에 기재된 다른 승객을 대신하여 또는 미성년자이거나 보상청구를 제출할 능력이 결여된 승객을 대신하여 보상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고객이 해당 승객을 대신하여 보상청구를 제출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v) 고객이 이미 당사에 직접 보상청구를 먼저 제출한 후 당사가 고객을 대리하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례에 대한 보상청구를 접수한 경우, 당사는 응답 전 제3자에게 고객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b) 본 제21.4조의 어떠한 조항도 고객이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변호사/법무법인 등(단, 클레임 관리 회사는 제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거나 보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1.5 고객 운송 지연에 대한 당사의 책임 제한

- (a) 고객 운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고객당 6,303 SDR로 제한됩니다. 단,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연을 초래했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i) 의도적인 경우 또는,
 - (ii)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행동한 경우
- (b) 당사가 당사, 당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c) 고객은 지연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보상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예: 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 (d) 고객의 운송 지연 피해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제23.7조를 참조하십시오.

21.6 배타적 권리 및 구제책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이상 항공편이 지연, 취소되거나 고객의 탑승이 거부된 경우, 본 운송약관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령상 강행규정에 따른 고객의 권리는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권리 및 구제 수단으로, 당사는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2. 활주로 지연 비상 계획

22.1 당사는 미국과 공항 내 지연에 대비하여 활주로 지연 비상 계획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irginatlantic.com/policies/contingency-plan-for-lengthy-tarmac-delays>

22.2 고객이 미국 출발 또는 도착 코드셰어 항공편을 이용 중인 경우, 해당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활주로 지연 비상 계획이 적용됩니다.

23. 고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 및 보상청구 제기

23.1 당사의 책임이 결정되는 기준

당사의 책임(및 고객의 여정에 관련된 각 항공사의 책임)은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a) 본 운송약관
- (b) 항공편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의 운송약관
- (c) 적용 법령

23.2 적용 법령

- (a) 승객 및 수하물의 항공 운송(항공사의 책임 포함)은 특정한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Regulation 261/2004, Regulation 2027/97,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및/또는 개별 국가의 현지 법률이 포함됩니다.
- (b) 본 운송약관에 명시된 책임 제한이 관련 법령상 명시된 책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령(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책임이 적용됩니다.

23.3 당사의 책임 범위

- (a) 당사는 당사 또는 코드셰어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 또는 당사 고객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항공편의 운항 중 발생한 피해 또는 지연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가 다른 항공사에서 운항할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당사는 다른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항공사의 운송약관에는 더 낮은 책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b) 수하물의 운송이 연결 항공사(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협약의 정의에 따름)에 의해 수행된 경우, 고객은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항공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3.4 승객의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

- (a) 당사는 승객이 입은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가 항공기 기내 또는 항공기 탑승 또는 내리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에만 Regulation 2027/97,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이 입은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 (b)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협약에 따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 (c) Regulation 2027/97 및/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의 책임에는 아래 제 23.5조에 요약된 몬트리올 협약 및/또는 Regulation 2027/97에 따른 한도 및 제한이 적용됩니다.
- (d)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가 발생시 당사는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입증된 손실 및 비용 중 회복 가능한 피해의 보상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 (e) 당사는 모든 제3자에 대한 모든 구상권 및 대위권을 보유합니다.

23.5 몬트리올 협약 - 승객의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

- (a)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당사의 책임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b) 151,880 SDR 이하의 보상청구의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에 대하여 다투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부상 또는 사망한 승객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자의 과실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의 책임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c) 151,880 SDR을 초과하는 청구의 경우, 당사는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151,880 SDR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i) 당사가 과실 또는 기타 책임이 없는 경우, 또는
 - (ii) 피해가 제3자의 과실 또는 기타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 (d) Regulation 2027/97에 따라 당사에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여하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상 대상자의 신원이 확인된 후 15일 이내에 겪은 보상 대상자가 겪은 어려움에 비례하여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선지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승객이 사망한 경우, 선지급금은 승객당 최소 16,000 SDR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e) 선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가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f) 당사는 당사의 책임에 따라 당사가 선지급한 금액을 추후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g) 다음의 경우 당사는 선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i) 당사가 피해가 부상 또는 사망한 승객 또는 보상청구하는 자의 과실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된 경우, 또는
 - (ii) 당사가 선지급금을 수령한 자가 이를 수령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밝혀낸 경우

23.6 기타 중요한 정보

- (a) 본 운송약관 및 모든 적용 조건은, 책임의 면제 및 제한을 포함하여, 당사의 대리인, 직원 및 대표에 대하여 당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이들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당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b)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i) 당사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Regulation 2027/97,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당사의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을 포기, 또는
 - (ii) Regulation 2027/97,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또는 적용 법령에 따라 당사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당사가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거나 이미 지급한 공공 사회보장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주장 가능한 모든 방어 수단을 포기
- (c) 당사의 책임에 대한 주요 조항의 요약은 항공권에 명시되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약은 보상청구의 근거가 되거나 본 운송약관 제23조를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23.7 법적 조치 제기 시한(수하물 제외)

- (a) 고객은 다음 중 하나로부터 피해 또는 지연에 대한 법적 조치를 2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 (i) 고객의 목적지에 도착일
 - (ii)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 또는
 - (iii) 운송이 중단된 날
- (b) 보상청구 제기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 (c) 수하물에 관한 보상청구 제기 기한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4. 여행자 보험 및 지급불능에 대한 보호

24.1 고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에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여하한 운항 차질, 수하물 및 그 내용물의 가치, 의료 관련 위험을 포함하여 고객의 전체 여정에 대하여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4.2 지급불능에 대한 보호

24.2.1 패키지 여행상품 또는 연계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예약은 당사의 지급불능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4.2.2 연계 여행 상품 – 고객이 하나의 여행 서비스를 선택하여 결제한 후 추가적인 여행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당사로부터 고객의 예약 확인을 수령한 후 24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전달된 링크를 통하여 추가적인 여행 서비스를 예약한 경우, 예약 방식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아래의 중요 고지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24.2.3 만일 고객이 영국 내에 거주 중이며,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한 동일한 세션 내에서 추가 여행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당사로부터 예약 확인을 수령한 후 24시간 이내에 당사가 제공한 링크를 통해 추가 여행 서비스를 예약하신 경우, 해당 서비스들은 연계 여행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2018년 제정된 패키지 여행 및 연계 여행 상품 규정(Package Travel and Linked Travel Arrangements Regulations 2018)에 따라, 당사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필요시 귀국 항공편을 제공하는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자체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환불은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24.2.4 당사는 아래 기관을 통해 지급불능 보호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사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거절된 경우, 아래 기관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Passenger Protection Ltd IPP House	Tel: +44 (0)208 776 3750 이메일: info@ipplondon.co.uk
---	---

22-26 Station Road West Wickham Kent BR4 0PR United Kingdom 영국 내 등록번호: 2498563	웹사이트: www.ipplondon.co.uk
---	--

International Passenger Protection Ltd는 영국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허가를 받아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보험은 Liberty Mutual Insurance Europe SE가 인수하였습니다.

주의: 본 지급불능 보호는 당사 이외의 계약 당사자와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의 지급불능 상황에서도 해당 계약이 이행 가능한 경우에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018년 패키지 여행 및 연계 여행 상품 규정(Package Travel and Linked Travel Arrangements Regulations 2018)의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egislation.gov.uk/ukxi/2018/634/contents>

25. 해석

25.1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명령 또는 의회 정보에 대한 당사의 해석은 이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집니다. 단, 모든 중요한 시점에 당사가 달리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25.2 본 운송약관의 각 조항의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문의 해석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